

2022년 7월 26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월 25일(월) 12:00 이후 보도 가능



중소벤처기업부

보도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• 문의 : 전통시장육성과 김윤우 과장(044-204-7890), 장병석 사무관(7822), 고동혁 주무관(7892)

전통시장 큰불 막은 1등 공신, 화재알림시설!

손실액 보상은 화재공제로!

- 대구 성서용산시장 사례 소개 -

- 대구 성서용산시장 화재 발생했으나, 화재알림시설에 의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서 16분만에 초동진압 완료로 큰 피해 막아
- 화재발생 점포는 화재공제 가입으로 손실액 대부분 보상받고, 신속한 생업 현장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
-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현재 공고 중인 사업으로 7.29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화재공제 가입은 언제든지 가능

최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화재알림시설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.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이영, 이하 중기부)는 7월 13일 23시경 대구 성서용산시장의 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,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한 화재알림시설 덕분에 관할 소방서가 신속히 출동하면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했다.

화재알림시설은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기부가 '17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전국 6만여 곳의 전통시장 내 점포에 보급하였다.

화재발생시 연기, 열,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하여 관할 소방서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으로 전통시장의 화재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,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점포는 '17년도에 중기부 지원을 받아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였다.

관할 소방서(강서소방서 죽전119안전센터)에 따르면, 인적이 드문 늦은 밤 화재가 자칫 큰불로 번질 수 있었으나, 화재알림시설에 의해 관할 소방서로 통보되면서 16분만에 신속한 초동진압 가능했다고 한다.

또한, 해당 점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도 가입('22.2월)되어 있어 손실액(추산중)의 대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, 이로 인해 신속하게 생업 현장 복귀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.

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화재 관련 민간보험에 가입이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생업안전망 구축 지원을 위해 '17년도부터 도입한 것으로 지금까지 약 4만여개의 전통시장 점포가 가입되어 있다.

이번에 피해를 본 점포주는 “화재 소식을 접했을 때 매우 놀랐으나, 화재알림시설로 큰불도 막고, 미리 가입한 화재공제 덕분에 피해보상도 가능한 것을 알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”라고 심경을 밝혔다.

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“대형화재를 막는데 화재알림시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”라고 언급하며, “앞으로도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안심하고 영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한편,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전통시장은 현재 공고 중인 '제4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'에 7월 29일까지 신청(접수처 : 해당 시·군·구)할 수 있으며, 화재공제 가입(fma.semas.or.kr)은 언제든지 가능하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장병석 사무관(☎ 044-204-7822), 고동혁 주무관(7892)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

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

- (사업목적) 개별점포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
- (지원조건)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*
 - * 총 사업비 70% 이내 범위에서 국비 지원(점포당 최대 56만원)

구분	설치내역	지원한도(국비)
개별점포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개별점포 : 감지기(유·무선) ○ 공용부분 : 씨씨티브이(CCTV), 수신기, 서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장당 최대 '56만원 x 신청점포 수 산출금액 이내 (개별점포+공용부분=56만원)
오픈점포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용부분 : 감지기(유·무선), 씨씨티브이(CCTV), 수신기, 서버 등 	

□ 화재알림시설 기본 구성도(안)



- (추진절차) 신청·접수(시장 → 시·군·구 → 시·도 → 지방청) → 현장평가(지방청, 시·도, 외부 전문가) → 서류평가(소진공) → 심의조정위원회(중기부)
- 추진실적 : '22년 6월 기준, 총 563곳 시장(60,321개 점포) 선정(국비 333.9억원)
 - (단위 : 곳, 금액 : 백만원)

구분	시장 수	점포 수	지원예산	비고
2017	6	1,445	1,613	시범사업 지원
2018	138	16,849	9,189	
2019	177	16,434	8,457	
2020	108	11,694	6,471	
2021	44	6,704	3,734	
2022. 6월	90	7195	3,927.6	
계	563	60,321	33,391.6	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전통시장 특성 반영 및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화재공제 도입으로 상인들의 생업안전망 구축
- (내용) 상인 스스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 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 운영
- (가입 단위) 전통시장 내(內) 개별점포
- (가입목적물) 건물, 시설, 재고자산, 타인의 재물 및 신체(특약)

< 공제상품예시(1년 기준) >

구분		2천 만원 (건물/동산 각 1천만원)	4천 만원 (건물/동산 각 2천만원)	6천 만원 (건물/동산 각 3천만원)
주계약	재물손해	A급	연 66,000원	연 132,000원
		비(B)급	연 101,500원	연 203,000원
특 약	화재배상책임	- 추가공제료 : 연 6,200원 - (대인) 1인당 사망1억, 부상 2천만원 한도 / (대물) 1억 한도		
	임차자배상책임	- 가입 시 건물요율의 10% 할인 적용		
	음식물배상책임	- 추가공제료 : 연 16,600원 (자기부담금 30만원) - 대인 : 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 한도 - 대물 : 1사고당 1천만원, 공제기간 중 5천만원 한도		
	화재벌금	- 추가공제료 : 연 100원 - 벌금형 확정 판결 시 (형법 170조) 1.5천만원 / (형법 171조) 2천만원		
	시설소유·관리자 배상책임	- 추가공제료 : 연 26,600원 (자기부담금 10만원) - 대인 : 1인당 1천만원, 1사고당 1억원 한도 - 대물 : 1사고당 1억원, 공제기간 중 1억원 한도		
	점포휴업일당	- 추가공제료 : 연 2,400원 - 점포휴업일당(3일초과)=복구기간내 휴업일수×1일당 가입금액(5만원)		

* 건물구조급수(A/B급) : 건물의 기둥/보/바닥, 지붕(틀), 외벽의 건축 자재에 따라 나눈 등급
 * 가입한도 : 최대 6천만원 이내(건물/동산 각 3천만원), 주 계약의 경우 100만원 단위로 가입가능

□ 그간 추진경과

- (상품 판매 실시) '17.1월 ~
- (상품 개선) 장기계약(최대 3년) 및 음식물 배상책임, 화재벌금('18.7월) 및 휴업손해담보특약('21.1월) 등 특약 상품 추가 도입
- (공제상담사 확대) 상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 관련 절차 일체를 일임하고 있는 공제상담사 확대(70명→80명) 운영('21.5월)

□ 화재공제 가입현황('22.6월 말 기준) : 39,247건, 적립금 8,837백만원